

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「항만법」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”를 “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”으로, “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”을 ““관리청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각각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각각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각각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별표 3 비고 제2호 중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을 “관리청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7조(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)		제27조(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)		
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		① ----- ----- -----.		
1.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(이하 “임대료”라 한다)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「항만법」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(이하 “항만시설운영자등”이라 한다)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		1. ----- ----- ----- --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 ----- ----- ----- “관리청등” ----- ----- -----		
2. · 3. (생략)		2. · 3.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들이 정할 수 있다.		② ----- ----- 관리청등 ----- -----.		
제29조(부두운영계약의 내용)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	제29조(부두운영계약의 내용) -- ----- ----- ----- --.		
1. · 2. (생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3.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		3. ----- ----- 관리청		

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
이 협의한 사항

제29조의2(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)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 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(開場)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
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
등

제29조의2(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) ① 관리청등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관리청등

③ 관리청등

제29조의3(부두운영계약의 갱신)

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 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

제29조의3(부두운영계약의 갱신)

① -----

-- 관리청등-----

---.

② 관리청등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관리청등-----

-----.

④ 관리청등-----

미리 협의할 수 있다. 제29조의4(위약금의 부과) ① (생략) ② <u>항만시설운영자등</u>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. 이 경우 <u>항만시설운영자등</u>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<u>항만시설운영자등</u>이 인정하는 경우	-----. 제29조의4(위약금의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관리청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관리청등</u>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리청등</u>----- -----
--	---